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황명강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황명강 의원

나. 제안이유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안함.
-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교류와 문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북도와 다른 나라와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둘째, 도내 대학의 고등교육기관과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셋째, 경북도내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경상북도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 인력 양성과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넷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지역대학의 우수학생 선발의 기회 제공과 학생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따른 해당 지역의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교육부 통계자료(2023.4.1. 기준)에 따르면, 2018년 142,205명에서 2023년 181,842명으로 증가하여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참고자료1), 경상북도에는 2023년 기준 7,52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참고자료 2).
- 따라서, K-팝, 드라마 등 한류열풍과 국격 상승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규정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과 농어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사회에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
‘외국인 유학생’을 경북도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어학연수생’을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3조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경상북도의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을 강조한 것임.
- 안 제4조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취업 등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5조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장학금 지원’, ‘기숙사 등 주거 지원’, ‘생활·법률 상담’, ‘취업·창업 교육

및 상담’, ‘경북의 정체성 강화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등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우수한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안 제6조의 유치 확대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8조는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규정한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K-팝, 드라마 등 한류열풍과 국격 상승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으므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김은영, 오현민), 첫째, 안 제1조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우수한’의 평가기준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상 외국에서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우수한 학생으로 통칭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둘째,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서 봉사활동 하는지,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의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기준이 없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내 거주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함.

셋째, 이슬람권, 공산권(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의 유학생이 증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경제개발이 낮은 저개발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소 우려되는 측면은 있으나, 글로벌시대에 K-팝, 드라마 등이 이미 중동이나 공산권 등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경상북도 정체성 교육을 통한 인재로 양성할 경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견됨. 우리나라는 2024년 현재 193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일정 수준의 경제, 교육, 환경, 사회적 발전을 이룬 국가에 해당함.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를 포용·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사료됨.

넷째, 국내 학생들과의 역차별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내국인들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제도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졸업 후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역차별 우려는 다소 지나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음.

다섯째, 예산 낭비(혈세낭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학 후에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국과 경상북도에서 배운 학문과 기술을 해당 국가에 전파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경상북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상품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여섯째, 범죄, 무단결석, 불법취업, 사회통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가 어려움을 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경우 유학을 매개로 하여 불법취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과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국 가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계
2018	68,537	27,061	5,496	6,768	3,977	2,746	27,620	142,205
비율(%)	48.2%	19.0%	3.9%	4.8%	2.8%	1.9%	19.4%	100.0%
2019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29,492	160,165
비율(%)	44.4%	23.4%	4.7%	4.6%	2.7%	1.8%	18.4%	100.0%
2020	67,030	38,337	9,104	6,842	3,174	1,827	27,381	153,695
비율(%)	43.6%	24.9%	5.9%	4.5%	2.1%	1.2%	17.8%	100.0%
2021	67,348	35,843	8,242	6,028	3,818	2,218	28,784	152,281
비율(%)	44.2%	23.5%	5.4%	4.0%	2.5%	1.5%	18.9%	100.0%
2022	67,439	37,940	8,608	7,348	5,733	3,369	36,455	166,892
비율(%)	40.4%	22.7%	5.2%	4.4%	3.4%	2.0%	21.8%	100.0%
2023	68,065	43,361	10,409	10,375	5,850	3,214	40,568	181,842
비율(%)	37.4%	23.8%	5.7%	5.7%	3.2%	1.8%	22.3%	100.0%

* 출처: 교육부 통계자료, 2023.4.1.

[참고자료 2]

출신국가별 경상북도 내 외국인 유학생 수

연번	국가	인원	연번	국가	인원
1	베트남	2,753	21	말레이시아	18
2	중국	1,597	22	가나	16
3	우즈베키스탄	931	23	말라위	15
4	몽골	803	24	나이지리아	14
5	미얀마	141	25	대만	14
6	일본	119	26	네덜란드	13
7	인도네시아	116	27	르완다	12
8	키르기즈	78	28	에티오피아	12
9	인도	69	29	이탈리아	12
10	네팔	54	30	우간다	11
11	방글라데시	52	31	캐나다	11
12	미국	45	32	이란	10
13	필리핀	38	33	콩고민주공화국	10
14	프랑스	35	34	탄자니아	10
15	파키스탄	30	35	튀르키예	10
16	카자흐스탄	29	36	기타(10명미만)	352
17	러시아	27		합 계	7,528
18	캄보디아	27			
19	타지키스탄	24			
20	태국	20			